

귀하께서 이 서신을 다른 언어로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,
<http://www.fema.gov/individual/privacy> 을 방문하거나 1-800-621-FEMA (3362) 혹은
청각장애자용 전화 1-800-462-7585 에 전화하십시오.

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1998 년과 2004 년 사이에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는
지역에서 발생한 재난(들)로 인해 FEMA 로부터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. 정보를 얻기
위해 FEMA 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우스 플로리다 선-센티넬에 귀하의 재난 피해 주택의
주소를 제공하도록 FEMA 에게 지시하는 최근 법원 명령에 관해 알려 드리기를 위해
저희는 이 서신을 보냅니다. 귀하가 2004 년도에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4 개의 허리케인
중 1 개로 인해 재난 보조를 신청한 경우, 법원 명령은 또한 FEMA 에게 뉴스-프레스와
펜사콜라 뉴스 저널에게 귀하의 주소를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.

최근 이들 플로리다 신문사들이 FEMA 에게 도움을 요청한 귀하와 같은 신청자들에 대한
재난 보조 정보를 제공하도록 FEMA 에게 요청하였습니다. 그당시 FEMA 는 제공된
전체적 보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신문사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. FEMA 는 재난
신청자의 이름 혹은 주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는 사생활권법이
그러한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. 신문사들은 이름과 주소를 얻기
위해 FEMA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법원은 FEMA 가 신청자의 집 주소만을
신문사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. 법원 케이스는 뉴스 프레스 대 DHS/FEMA,
(U.S. App. LEXIS 14817 (2007 년 6 월 22 일))이었습니다.

저희는 귀하가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귀하는 FEMA 가 귀하의 사생활을 보호해 줄 것을
기대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. 그러나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법원의 명령을
따라야만 합니다.

다시 말씀 드리면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FEMA 는 신문사들에게 귀하의 재난 피해
거주지의 주소를 주게 될 것입니다. 저희는 귀하의 이름 혹은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
다른 개인적인 정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.

기록을 위해 이 서신을 보관하십시오. 귀하께서 질문이 있는 있는 경우, 1-800-621-FEMA
(3362) 혹은 청각장애자용 전화 1-800-462-7585 에 전화하여 FEMA 에 연락하십시오.